2025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심의결과 발표(시각, 다원)

1 추진 경과

- □ 심의 대상사업 : 총 2,008건
- □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 및 운영
 - *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진행 방식, 심의 사후관리 등 심의운영절차는 「2025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심의 운영 및 관리기준」에 따라 운영됨.
 - 「2025 서울문화재단 통합 심의위원풀」내 분야별 전문성 및 성비 등을 고려하여 3배수 심의위원 풀을 구성함 .
 - 3배수 심의위원 풀을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심의위원을 확정하며, 섭외순위는 서울문화재단 윤리경영실 참관을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음.
 - 확정된 우선순위별 섭외를 진행하며 심의위원의 제척확인 및 공정심의, 청렴 서약서 작성을 강화하여 심의위원의 책임감을 강화하여 운영함.
 - 심의위원 사전 워크숍을 통해 사업 및 심의에 대한 충분한 숙지 후 심의 진행

○ 구성기준

- 심의그룹은 사업공고 시 고지된 분야별 세부 심의그룹에 따라 나뉘어져 진행됨.
- 심의 건수에 따른 심의위원 수 구성(5명 이상)
 - * 세부분야를 구분하여 심의하고, 장르의 통합적 이해와 변별성 있는 지원을 위해 A, B, C트랙을 동일한 심의위원이 심의 진행
 - ※ 심의그룹 내 신청건수가 500건 내외일 경우 심의그룹을 분리하여 심의(평면)
 - ※ 다원의 경우, 트랙 구분 없이 동일한 심의위원이 심의 진행

○ 심의분야 및 구성인원 : 총 6개 심의그룹, 30명

분야	심의그룹	심의위원
	평면A	김인선, 안대웅, 안소연, 임상빈, 전효경
	평면BC	곽영빈, 기혜경, 민병직, 이관훈, 이성휘
시각	입체	강재현, 이경모, 이진실, 차기율, 채은영
	미디어	고동연, 김신재, 오석근, 유원준, 이채영
	공예	도화진, 장윤주, 정미성, 정용진, 최범
다원		권순우, 권용주, 이예승, 전강희, 조주현

□ 심의지표

○ 시각

	시이기 조	트랙별 가중치			
심의기준		A트랙	B트랙	C트랙	
	프로젝트의 우수성	25	30	30	
25년도 계획	프로젝트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30	25	20	
	예술계/관람자 대상 기대효과	15	15	20	
기존 활동	예술활동에 대한 발전 가능성	20	15	10	
	예술적 역량	10	15	20	

○ 다원

	심의기준	세부배점
	프로젝트의 우수성	20
25년도 계획	프로젝트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25
" "	예술계/관람자 대상 기대효과	15
기존 활동	예술활동에 대한 발전 가능성	20
	예술적 역량	20

2 심의결과

□ 최종 선정결과 : 총 157건 선정

* 분야별 선정자 명단, 심의총평은 붙임문서 참조

	분야	접수건수	최종선정결과	
	A트랙	732	43	
시각	B트랙	735	57	
	C트랙	201	28	
	다원	340	29	
	합계	2,008건	157건	

3 향후 절차 및 일정 안내

□ 향후 절차

심의 선정결과 발표	•	사업 포기신청 (중복선정 등)
01.10.(금)		~ 02.05.(수)

•	예비선정자 확정 및 개별 통보
	~ 02.12.(수)

•	선정자(단체) 간담회 개최
	2월 중
	※ 세부내용 추후공지

- □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및 타 기관 지원사업 중복선정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
 - : 수행할 사업을 택1 후, 2025년 2월 5일(수)까지 재단으로 통보
 -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된 <u>동일한 사업</u>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 원회 및 문예진흥기금,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수행할 사업을 택1 ※ 동일사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 기관과 내용 확인절차 진행
 - 통보기한 이후에라도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중복선정임이 확인될 경우, 해당사업은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진행
- □ 기타 지원신청 부적격사항 발생 사업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
 - 지원신청 시 제출한 지원신청책임제 동의사항에 따라 선정자(단체)는 지원사업 공고 시 안내된 지원신청 부적격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지원신청 당시 선정자(단체)의 지원신청 부적격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정 이후 부득이 한 사유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포기기한 내 재단으로 통보
 - 기한 이후에라도 허위사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해당사업은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진행

□ 지원사업 포기신청 기한 안내

- 결과 발표 후, 선정된 예술인/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025년 2월 5일(수)까지 사업포기 신청을 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담당자 유선 연락 후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 내 포기신청

○ 신청기한 이후 사업포기 시 차기년도 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심의과정에서 배제됨. ※ 단, 재단이 인정하는 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함.

□ (필수참여)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선정자 간담회

- 일 정 : 2025년 2월 중(일시 추후 공지 예정)
- 내 용 : 지원금 운영·관리 절차 및 집행 요령, 사업 개선 사항 등 안내 등 ※ 선정자 대상 추후 개별 안내 예정

□ 지원금 교부 : 2025년 2월 중순 ~ 11월 30일

- 지원금 사용규정 및 의무이행사항에 따라 교부신청서 승인 후 지원금 교부
- <u>2024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한 선정자의 경우</u>, **전년도 사업 종료 및 정산·성과보고 확정 이후 올해 지원금이 교부 가능**하므로 유의

□ 향후 지원사업 수행 시 행정사항

- 선정 후에라도 위반행위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사업은 지원이 취소 되거나 보조금 규정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서울문화재단 타 사업 환류대상자 등)
- 본 사업과 관련하여 <u>전문가, 시민 현장모니터링 및 담당자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u>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진행사항 및 실적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 요망.

4 기타사항

□ 이의신청제도 운영

- 심의절차 또는 심의위원의 의결 과정 중 심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신청자(단체) 본인에 한하여 이의신청 진행
 - ※ 단, 이의신청 시에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근거를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함.
- 이의신청 기간 : 2025년 1월 24일(금)까지
- 이의신청 대상
- 심의절차 중 행정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발생되어 잘못된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의 이해관계, 금품향응 수수, 담합, 위계폭력 등 불공정한 심의를 한 것이 드러난 경우
- 기타 심의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업무처리가 발생한 경우
- ※ 예술적 수월성에 기반한 이의제기는 가치판단 영역이므로 본 이의신청 대상(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이의신청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의신청	•	아래의 4가지 중 해당 여부 판단 ① 심의과정 중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② 심의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이해관계, 금품향응수수, 담합 등)가 확인된 경우 ③ 심의위원 자격의 결격사유(제척사유 등)가 확인된 경우	•	[미해당] 조치 없음	•	신청자 결과공지
신청접수(외부)		④ 기타 심의과정 및 결과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업무처리가 발생한 경우	•	[해당] 하단 '후속조치	•	결과공지
		▶▶ 해당 심의에 참여했던 심의위원 및 재단 관계팀(주무부서, 윤리경영실 등)의 종합판단에 따름		방안'에 따름		

- ※ 세부 조치방식은 사안에 따라 2단계 종합판단 시 조정될 수 있음.
- 호속조치 방안

1	심의과정 중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 해정적 처리가 필요한 건의 경우 규정 및 방침에 따른 행정조치 적용 -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 가능(전체 또는 해당 건)			
2	심의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이해관계, 금품향응 수수, 담합 등)	②-1. 신청주체와 심의위원 간 쌍방이 모두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 해당 건 선정 취소, 재단이 정한 조치에 따라서 심의위원 자격정지(최대 10년) 등 ②-2. 심의위원에 한해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난 경우 : 해당 심의위원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의위원의 점수 재집계 후, 선정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해당 건에 대해 선정 여부 결정 ※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불용액 예산 등을 활용하여 충당		
3	심의위원 자격의 결격사유(제척사유 등)가 확인된 경우	- 재단이 정한 조치에 따라서 심의위원 자격정지(최대 10년) 등		
4	기타 심의과정 및 결과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업무처리가 발생한 경우	- 행정적 처리가 필요한 건의 경우 규정 및 방침에 따른 행정조치 적용 -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 가능(전체 또는 해당 건)		